

2011 승진 형법기출문제 경장 [윤황채교수]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구) 아동복지법(2000.1.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다.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게 되어 범죄론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②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③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범무사가 아닌 사람이 범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범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범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범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3.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책임요소설은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초래하고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
- ②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④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4.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담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담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 ③ 골프공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다음은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 ㉡ 각종 차량의 내왕이 빈번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든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운전자로서는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 ㉢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인터체인지 진입로부근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로 고속버스 우측으로 추월한 직후에 자동차의 30m 내지 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6. 다음은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화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자구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권에 생명, 신체, 명예 등의 권리와 같이 한 번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권리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먹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8.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 ③ 마약취급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④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제한고의설에 대해서는 상습범 또는 확신범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형사정책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9.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틀린 것(X)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판례에 의함)

- ㉠ 나이트클럽 주인이 지도교수의 인술 하에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 생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단체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위 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 중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은 없다.
- ㉢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 선거기간 중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당직자회의를 마치고 난 후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 뿐 아니라 일반당원에게도 술과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① ㉠(O) ㉡(O) ㉢(O) ㉣(O) ② ㉠(O) ㉡(X) ㉢(O) ㉣(O)
③ ㉠(X) ㉡(O) ㉢(X) ㉣(O) ④ ㉠(O) ㉡(O) ㉢(X) ㉣(O)

10. 다음 중 합동범으로만 연결된 것은?

- ① 특수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 ②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 특수공무방해죄(형법 제144조 제1항)
- ③ 간통죄(형법 제241조 제1항) - 도박죄(형법 제246조 제1항)
- ④ 소요죄(형법 제115조) - 내란죄(형법 제87조)

11.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들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인 공용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2. 다음 중 불능범에 해당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 ②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③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 ④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던 경우

13. 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치과 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 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
-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

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㉔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㉑ 17세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다음 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미수죄가 성립한다.

㉒ 18세의 여자를 유혹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혹주점에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㉓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출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㉔ 제왕절개수술을 함에 있어 임신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묶인 것은?

- 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불능미수 ② 중범 - 심심미약자
③ 자수·자복 - 중지미수 ④ 농아자 - 과잉방위

16.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③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17.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로부터 뺨까지 맞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앞으로 수박이 없어진다면 내 책임으로 한다.”는 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8. 강간과 추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②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③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④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②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③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단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20.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

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뚝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경우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21.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②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상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2.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某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버린 경우 위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甲회사가 乙에게 철재를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甲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乙로부터 피해자丙이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23. 강도 등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하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줄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죄의 목적달성여부와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공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일지라도, 甲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甲에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힘이 너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과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된다.

24.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식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천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하였으나 마감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업체로부터의 매수신청이 없어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된 여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기망의 수단으로 영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배임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6. 공갈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자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

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④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27.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부동산임차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② 정상적으로 KOC 위원의 위촉절차를 밟지 않고 KOC 위원이 되고자 KOC 위원장에게 KOC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부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29. 甲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을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을 취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④ 배임죄

30.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① 통화위조죄 ② 음행매개죄
 ③ 도박개장죄 ④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3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익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침해범이 아니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 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③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2. 甲에게 괄호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丙이 사망한 후 丙의 상속인 甲은 丙이 생전에 乙에게 명의신탁한 W은행이 발행한 채권의 반환을 乙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 채권은 자신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乙 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하여 W은행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② 甲은 乙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甲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乙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丙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③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乙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공문서위조죄)

④ 丙은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나이트클럽의 명의를 乙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백지의 양도양수서 용지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乙의 부탁으로 동 서류를 보관하던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丙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서류에 丙이 위 나이트클럽을 甲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사문서변조죄)

33.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타인인 양 허위신고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②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자가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

③ 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④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한 자가 그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34. 법조문상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죄는?

①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

- ②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
- ③ 형법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
- ④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35.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36.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 ② 행정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 ③ 세무서 주세계장이 양조장 주인의 비밀스런 주정사용과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④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본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계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37.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 乙과 丙은 甲에 대한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 없이 甲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찾아갔다. 乙은 丙을 순찰차에 남겨둔 채 혼자 위 아파트에 가서 甲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였다. 甲은 乙과 동행하여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온 다음 태도를 바꿔 동행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乙이 甲을 제지하면서 형 집행을 위하여 구속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甲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甲은 이를 거부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다가 乙이 계속 제지하자 주먹으로 乙의 가슴 등을 때렸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 ① 무죄
- ② 권리행사방해죄
- ③ 업무방해죄
- ④ 공무집행방해죄

38.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 乙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어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39.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는 탈퇴한 때에 범죄가 종료한다.

②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적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4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다.
-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징계사건도 포함한다.
-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2011년 경찰관 정기 승진시험 모범답안(윤황채교수)

계 급		경 장		과 목		윤! 형법	
1	2	3	4	5			
④	①	②	③	③			
6	7	8	9	10			
③	④	④	②	①			
11	12	13	14	15			
④	②	④	①	①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③	③			
21	22	23	24	25			
②	①	④	②	②			
26	27	28	29	30			
③	②	①	③	④			
31	32	33	34	35			
③	④	③	②	④			
36	37	38	39	40			
④	①	②	①	③			

윤 황 채

- 약 력
- 현 서울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JBS 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고려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인천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경남대학교 형법특강강사
 - 현 대구 산업정보대 형법특강강사
 - 현 전국 경찰형법모의고사 대표출제위원
 - 전 대구 국민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서울 노량진 김재규 경찰학원 강의
 - 전 서울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강의
 - 전 대구 한교고시 학원 법원검찰 강의
 - 전 서울 종로 한교고시학원 강의
 - 전 부산 금자담경찰고시학원 강의
 - 전 영남이공대 경찰경호학과 강의
 - 전 마산 중앙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울산 남부고시학원 형법강의

윤황채 2011년 2차시험대비 형법판례특강 형법판례매려잡기특강

2011년 5월 예정

1. 2010년 1차, 2차시험에서 판례의 98%와 100% 적중률!
2. 직접 교재로 확인가능 합니다!!!
3. 판례를 알면 형법이 보이고, 고득점이 보이고 합격이 보인다!
4. 처음 형법을 공부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쉽게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1년 2차시험대비 형법총정리마무리특강 형법조문-형법이론 및 학설-핵심판례

2011년 7월 예정

1. 형법 법조문 완전정복!
2. 형법이론 및 학설 마무리정리!!
3. 출제가능 핵심판례 요약정리!
4. 2010년 최신판례 완벽정리!
5. 형법 쪽집게 암기사항 마무리!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음 2010. 제4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7판]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배움 2011. 초판]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8. 개정판]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음 2010. 초판]
6. 객관식 경찰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1. 제2판]
7. 법1 겸2 겸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8. 법1 겸2 겸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9. 법1 겸2 겸3 형법판례매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교재문의는 부산 JBS경찰학원(051-817-6112)
(051-817-3112)

서울 노량진 베리타스M고시학원 02-826-5700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부산 JBS경찰학원 051-817-6112

카페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golicore@naver.com

윤황채 형법고득점 7단계공부전략

1단계 : 교과서 공부 (PASS 핵심형법)

1순환 : 기초 법률용어공부(형법적응하기)

2순환 : 형법 기본학습(형법내용보기)

3순환 : 형법 심화학습(형법깊이보기)

2단계 : 기초형법 문제풀이(기본문제)

3단계 : 판례공부(판례때려잡기)

4단계 : 학설-이론-법조문 심화학습(형법총정리)

5단계 : 형법기출문제풀이

1순환 : 경찰기출문제(순경,경찰간부,경찰승진)

2순환 : 기타기출문제(검찰직,법원직,법원고시,사법시험)

6단계 : 형법기출지문정리(기출지문OX정리)

7단계 : All Pass 형법문제풀이

1순환 : 진도별 문제풀이(6회)

2순환 : 심화문제풀이(총론1회, 각론1회)

3순환 : 종합문제풀이(1회)